

장기요양급여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계약서

(☐ 주간보호 ☐ 방문요양 ☐ 방문목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의 **통합재가서비스**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	
이용자 (갑)	성 명		(서명 또는 인)	등 급 (인정번호)	
	생 년 월 일			연 락 처	
	주 소				
	기 타				
제공자 (을)	시 설 명	우리노인복지센터		시 설 종 류	장기요양 통합서비스
	대표자 성명	박 상 연 (직인)		연 락 처	063-636-6699
	주 소	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성황단길 22 (우리노인복지센터)	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	(서명 또는 인)	관 계	
	생 년 월 일			연 락 처	
	주 소				

제1조 (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**통합재가서비스**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**2024. . 일** 부터 **20 . . 일** 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감경, 비급여 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-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- 3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적정급여 제공)

-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한다.
- ② 가정방문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, 수급자 또는 그 가족(이하 "수급자 등"이라 한다)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,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.
 - 1. 가정방문은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2. 가정방문은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- 3. 가정방문의 급여비용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급여범위)

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춰 혼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이다.

- ① 주/야간보호: 원하는 요일, 시간에 서비스 이용 가능. 신체활동지원, 건강관리, 일상생활 지원, 인지활동지원, 기능회복훈련지원 등 제공한다.
 - ※ 주/야간보호는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.
- 1. 기능회복훈련지원: 물리(작업)치료사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지원 제공 → 잔존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전문가 개입

2. 건강관리: 주/야간보호 이용일에 간호(조무)사의 건강관리를 제공.
- ② 주/야간보호 내 단기보호: 주/야간보호 기관 내에서 월 9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.
 1. 가족 등의 외유, 외출,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.
 2.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임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.
- ③ 방문요양: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춰 수시대응(원콜) 지원, 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한다.
 1. 1일 다횟수: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1일 다횟수, 단시간 서비스 제공
 2. 원콜서비스: 급여제공계획 상에 계획된 일정은 아니지만, 수급자의 갑작스런 상태 변화로 일시적으로 단기보호, 요양 등 필요 시 서비스 지원
- ④ 방문목욕 : 주/야간보호 이용일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, 주/야간보호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.

※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. 다만,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⑤ 이동지원: 지자체에 등록된 주야간보호 차량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,간호사,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5조 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**통합재가서비스**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- ② '을'의 **통합재가서비스(주/야간보호)**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급여	구분	이용요일	이용시간
주간보호	제공시간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	오전 / 오후 08 시 30분 ~ 오전 / 오후 18 시 00분

- ※ 주간보호는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.
- ※ '갑'(또는 '병')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- ※ '을'의 주/야간보호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이용요일	이용시간
이용시간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	오전 / 오후 08 시 30 분 ~ 오전 / 오후 18 시 00 분

③ '을'의 **통합재가서비스(방문요양)**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급여	구분	이용요일	이용시간
방문 요양	이용 시간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 ☐ 일	오전 / 오후 08 시 30 분 오전 / 오후 ~ 18 시 00 분

※ '을'의 방문요양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이용요일	이용시간
이용시간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	오전 / 오후 08 시 30 분 오전 / 오후 ~ 18 시 00 분

※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.

※ '갑'(또는 '병')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※ '을'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당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
※ '을'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
※ 1일 2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
※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한,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%, 공휴일 급여비용의 50%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※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한다.

※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④ '을'의 **통합재가서비스(방문목욕)**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급여	구분	이용요일	이용시간
방문목욕	이용시간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	오전 / 오후 08 시 30 분 오전 / 오후 ~ 18 시 00 분

※ '을'의 방문목욕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이용요일	이용시간
이용시간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	오전 / 오후 08 시 30 분 오전 / 오후 ~ 18 시 00 분

※ '갑'(또는 '병')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※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. 다만,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(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)

- ① '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1. 월 이용료 납부
 2. **통합재가서비스** 범위 내 급여이용
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4. 기타 '을'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1. **통합재가서비스** 제공계약내용 준수
 2. 급여제공 중 '갑'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에게 통보
 3. '갑'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'갑'(또는 '병')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
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5. '갑'의 식사제공, 이용상담, 이용편익 제공
 6. '갑'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
 7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8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 9.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- ③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 4.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
- ④ '병'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.
 1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
 2.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(별지 제24호 서식)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
 3.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
 4.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
제7조 (미이용 비용산정)

- ① '을'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'갑'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(월~금요일)기준으로 한다.

제8조 (이용료 납부)

- ① **통합재가서비스**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**통합재가서비스**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③ '을'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'갑'(또는 '병')에게 장기요양급여 이

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.

- ④ '갑'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(으)로 10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⑤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- ⑥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온라인, 오프라인, SMS전송을 통해 안내한다.
- ⑦ 인정등급 변경, 본인부담금,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,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.

제9조 (재계약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-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- ③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
- ④ 기타 '갑'과 '을'이 필요한 경우

제10조 (계약해지 요건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2. 제5조의 **통합재가서비스**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6조제3항의 **통합재가서비스** 제공시간을 '갑'(또는 '병')의 동의 없이 '을'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- 4. 기타 '갑'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'을'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2. '갑'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3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4.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5.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6.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11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'을'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- ③ '갑'(또는 '병')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'갑'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을'은 등기,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'갑'(또는 '병')에게 송달처리한다.
- ④ '을'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2.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3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4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5. '갑'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 - 6.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12조 (건강관리)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'갑'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③ '병'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
- ④ '을'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'갑'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'갑'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3조 (개인물품)

- ① '갑'은 주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'갑'이 구비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4조 (단기보호 식사 및 간식)

- ① '을'은 이용자에게 1일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'갑'(또는 '병')의 동의를 얻어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,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(또는 '병')이 별도 부담한다.

제15조 (단기보호 침실의 배정)

- ① '갑'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, '갑'(또는 '병')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'을'이 변경할 수 있다.

제16조 (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면회,외출,외박)

- ① '갑'의 면회시간은 '을'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외출 및 외박은 '갑'의 건강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 '을'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③ 외출 및 외박 시 동행자가 '병'이 아닐 경우 '을'은 '병'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.
- ④ '병'은 외출 및 외박 중 '갑'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'을'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17조 (시설관리)

- ① '을'은 '갑' 또는 '병'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제18조 (시설물 배상)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(또는 '병')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위급 시 조치)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'을'은 즉시 '병'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0조 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'갑'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'을'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21조 (기록 및 공개)

'을'은 '갑'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(또는 '병'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2조 (배상책임)

- ① '을'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'갑'(또는'병'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1. 장기요양요원(또는'을'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장기요양요원(또는'을'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4.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4. '갑'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23조 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2024 년 월 일

'을'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과 '병'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'을' 대표자

박 상 연



'갑'과 '병'은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(계약자) '갑' 이용자

(서명 또는 인)

(보호자) '병' 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[별지 1]

통합재가(가정방문)서비스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4.01.01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 원	150분 이상	48,250 원
60분 이상	24,120 원	180분 이상	54,320 원
90분 이상	32,510 원	210분 이상	60,530 원
120분 이상	41,380 원	240분 이상	66,770 원
150분 이상	48,250 원	270분 이상	66,770 원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4,67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6,34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 원

○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15분 이상 30분 미만	40,760 원
30분 이상 60분 미만	51,110 원
60분 이상	61,490 원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6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 % , 6 %

통합재가(주야간보호)서비스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4.01.01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 미만	31,850 원	29,480 원	27,220 원	25,980 원	24,740 원	24,740 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9,810 원	36,850 원	34,020 원	32,470 원	30,920 원	30,920 원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3,360 원	49,420 원	45,620 원	44,070 원	42,500 원	42,500 원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6,360 원	61,480 원	56,760 원	55,210 원	53,640 원	53,640 원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73,110 원	67,720 원	62,570 원	61,000 원	59,450 원	53,640 원
13시간 초과	78,400 원	72,630 원	67,100 원	65,540 원	63,990 원	53,640 원
가족휴가 12시간미만	35,250 원	32,640 원	30,160 원	29,360 원	28,560 원	28,560 원
가족휴가 12시간이상	70,500 원	65,280 원	60,310 원	58,720 원	57,110 원	57,110 원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
- 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- 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- ※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(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)

○ 우리노인복지센터 통합주간보호 비급여항목 급여비용(원) (30일기준)

구 분	비 용	산 출 근 거	금 액
식재료비 (점심)	1회 3,000원	1일1회*3,000*30일	90,000원
식재료비 (저녁)	1회 1,500원	1일1회*1,500*30일	45,000원
간식비 / 이미용비	0		0
기 타	실비		실비

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.

2024 . . .

수급자(보호자) : (인 또는 서명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(주민번호 :)
주 소 :

1. 수집 및 이용목적

수집된 정보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업무에 활용하고,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질 수준 향상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며, 그 범위는 다음과 같고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없다.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- 센터에서의 활동사항 안내 등과 같은 공지사항에 대하여 장기요양 보험공단 홈페이지, 센터 밴드나 센터 홈페이지 등에 활용

2. 수집 대상정보(항목)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-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등의 활동사진, 영상 등

3. 수집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수집된 개인정보는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에만 이용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한다.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4 년 월 일

이용자 (대리인 보호자) : (인)

통합재가서비스 통합주간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안내 확인서

수급자	성명			
보호자	성명			
	연락처		입소자와의 관계	

○ 상기인은 **우리노인복지센터**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며,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3항 및 동 계약서 8조의 미이용 비용 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,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< 고시 제32조3항 >

③ 통합재가서비스(주야간보호)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(이하 “미이용일 급여비용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,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가 개시되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 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.
2.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(월~금요일) 기준으로 월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(제31조의 ‘라-3’의 50%를 한도로 함)를 산정한다.

2024 년 월 일

확인자(보호자 or 수급자) :

(인 또는 서명)

우리노인복지센터 귀중

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참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수급자용)

[참여신청서]

정보 주체 (수급자)	성명		전화번호	
	생년월일		주소	

①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: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추어 주·야간보호, 방문요양, 간호, 목욕, 단기보호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

② 수급자 본인부담금: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이 산정된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0%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함

③ 사업기간: 2021. 10. 1. ~ 예비사업 종료일

위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참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, 수집·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- 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관련 업무수행
-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: **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**
-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: **5년**
-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2.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- ① 민감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관련 업무수행
-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: **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참여 중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내역(급여종류, 서비스종류, 급여비용, 이용 일시)**
-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: **5년**
- ④ 위의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II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년 월 일

본인(수급자)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